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674

발의연월일: 2025. 4. 9.

발 의 자: 박균택・어기구・양부남

김태선 • 위성곤 • 맹성규

정준호 • 이재정 • 전현희

장경태 · 황명선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반드시 작성·제출하도록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선거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면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도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후보자들이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을 담은 저장매체를 제출할 경우 구·시·군선거 관리위원회가 시각장애선거인에게 해당 저장매체를 발송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선거인에게 다수의 저장매체가 발송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도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후보자가 선거공보의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파일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들이 제출한 디지털 파일들을 하나의 저장매체에 담아 시각장애선거인에게 발송하도록 하여 시각장애선거인의 정보접근권과 참정권을 보장하고, 동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등).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4항 단서 중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를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로 하고, 같은 조제11항 중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와 같이"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같이"로, "이를"을 "후보자들이 제출한 디지털 파일을 취합한 후선거별로 하나의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이를 책자형 선거공보와"로 한다.

제122조의2제3항제2호 중 "선거공보(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후보자가 제출하는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를 "선거공보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65조(선거공보) ① ~ ③ (생 | 제65조(선거공보) ① ~ ③ (현행 |
| 략) | 과 같음) |
| ④ 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 4 |
|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 | |
| 선거인(선거인으로서 「장애인 | |
|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 |
| 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 |
|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선거 | |
| 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 | |
| 한다) 1종을 제2항에 따른 책 | |
| 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의 두 배 | |
|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 다 | <u>,</u> |
| 만,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 | <u>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u> |
| <u>원선거</u>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u>원선거·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u> |
| 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 | <u> 거</u> |
| 공보를 작성 · 제출하여야 하되, | |
|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 |
|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 |
|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 | |
|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 |
| | |
| ⑤ ~ ⑩ (생 략) | ⑤ ~ ⑩ (현행과 같음) |
| ①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에 | ① |

게 제공하기 위하여 책자형 선 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 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 를 <u>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u> 거공보를 포함한다)와 같이 제 출하는 경우 배부할 지역을 관 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 원회는 <u>이를</u>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① ~ ⑭ (생 략)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 ① · 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費用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候補者를 위하여부담한다. 이 경우 제3호의2 및 제5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1. (생략)
- 2. 제65조에 따른 점자형 <u>선거</u> 공보(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 |
|---------------------|
| 공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 |
| <u>서 같다)와 같이</u> |
| |
| <u>후보자</u> |
| 들이 제출한 디지털 파일을 취 |
| 합한 후 선거별로 하나의 저장 |
| 매체에 저장하여 이를 책자형 |
| 선거공보와 |
| |
| ① ~ ⑭ (현행과 같음) |
|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
| ① · ② (현행과 같음) |
| 3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
| 2 <u>선거</u> |
| <u> 공보의</u> |

후보자가 제출하는 저장매체 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작성비용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 및 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 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및 전 단형 선거공보의 발송비용과 우편요금

3. ~ 7. (생략) ④·⑤ (생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7. (현행과 같음)④ · ⑤ (현행과 같음)